2019년도 제2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자 : 2019. 10. 11.(금요일)

o 방　　법 : 온라인심의

o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손승우 위원(분과위원장), 강상욱 위원, 백대용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Ⅱ. 회의내용 및 결과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07건(안건번호 제2019-129471호~129570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 본건 심의안건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고, 개별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원도 존재하지 않아 보이며, 저작권자가 모두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저작물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의 유포는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됨. 특히, 이번 안건들은 모두 웹하드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영상저작물로 보호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안건번호 제2019-129471호~129570호는 불법복제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B 위원 : 제2019-129471호~129570호는 도도파일, 파일구리 등 웹하드에 저장되어 불법적으로 게시된 최근 또는 상영중인 영화 복제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봉오동전투, 안녕 베일리, 예스터데이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다수가 OSP 자체적으로 삭제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아니하여 조속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검토 결과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되며 모두 가결 의견입니다.

- C 위원 : 심의 안건인 복제물은 모두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영상물들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함

심의안건 복제물들에 대해 개별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복제물 파일의 업로드 등으로 각 저작물을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음

2019년 제216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0. 21.

분과위원장 손승우

위원 강상욱

위원 백대용